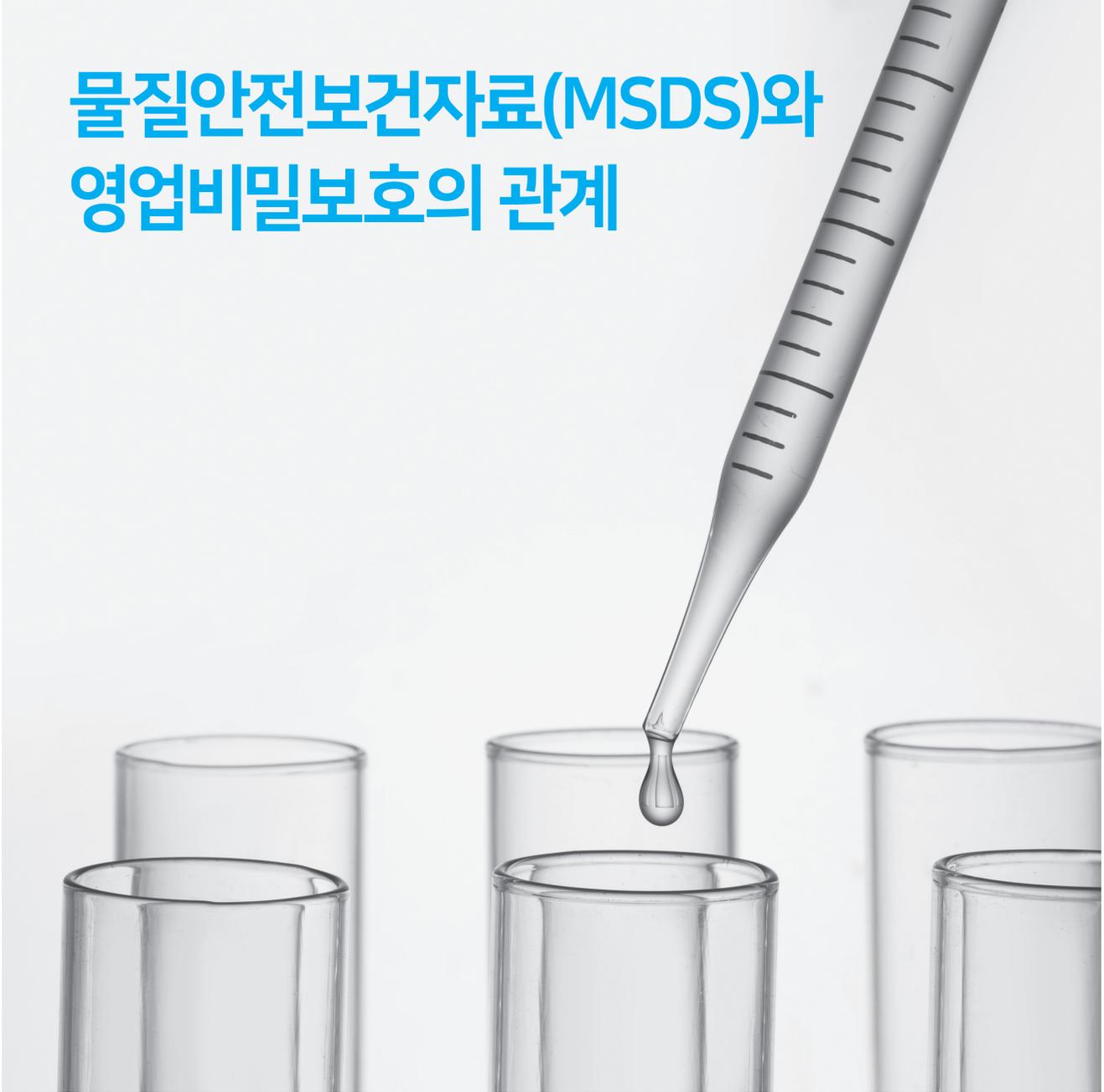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영업비밀보호의 관계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법학박사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하고,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18년간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노동법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의 발간에 공헌했으며,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노동기초분 강의를 담당했다.

1. 들어가며

가. MSDS 제도의 도입과 한계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에 의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나 관련자의 알 권리(Right of known)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중의 하나로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제도가 시행되어 화학물질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MSDS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정보 전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MSDS의 내용 중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성분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영업비밀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영업비밀 보호에 의한 비공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에 대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영업비밀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2011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상 사업장 73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MSDS의 수는 8만3,832종이었으며, 그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의 수는 3만8,151종(45.5%)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료물질의 MSDS에 적용되어 있는 영업비밀은 4,788종(24.5%),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 영업비밀 적용은 3만3,363종(51.9%)으로 외부보다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영업비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또한 2014년도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MSDS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약 67.4%(단일물질: 9.0%, 혼합물질: 75.6%)의 GHS MSDS가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다. 문제의 소재

이에 관해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장범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넓고, 영업비밀 보호규정이 남용되고 있어 MSDS 제도의 효과적 시행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산안법과 외국의 MSDS와 영업비밀 보호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행 산안법의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한다.

2. 산안법상 MSDS와 영업비밀 보호

가. MSDS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MSDS에는 ①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②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③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⑤물리·화학적 특성, ⑥독성에 관한 정보, ⑦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⑧응급조치 요령, ⑨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산안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92조의4 제1항).

나.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할 때 ①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②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산안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구성 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1) 이종한·이권섭·박진우·한규남, <사업장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1권 제3호(2011), 128면

2) 이종한·이권섭·박진우·한규남, 앞의 글, 130면

3) 윤충식, <영업비밀 물질의 관리>, 산업보건 제341호(2016. 9.), 28면

인정되는 것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산안법 제41조 제2항, 시행규칙 제92조의4 제2항).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다. 영업비밀 적용제외 대상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①산안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②산안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③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④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등에 대하여는 영업비밀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산안법 제41조 제2항 단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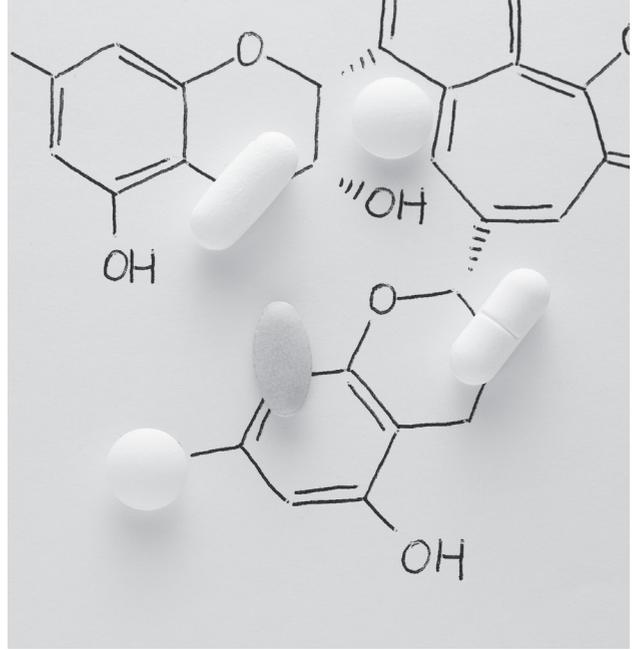
3. 외국의 입법례

가. EU의 SDS(Safety Data Sheets) 규율체계

(1) EU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ropean 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에서 SDS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SDS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글로벌 화학물질의 조화로운 분류 및 표시제도(GHS)에 따를 것, 물질·혼합물의 분류·표지·포장 규정(the European Union system of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CLP), GHS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시행될 것 등이다.

REACH에 의한 SDS 기재사항으로는 물질·혼합물의 정보 및 회사·기업의 신원, 유해성 확인, 성분에 관한 정보, 응급처치 수단,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사고 누출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규제·개인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징,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학적 정보, 생태학적 정보, 폐기 시 고려사항, 운송관련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기타 정보 등이다(제31조 제6항).

(2) 화학물질청(ECHA)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혼합물·



완제품내의 물질의 명칭 등 REACH 제119조 제1항에 기재된 정보는 공개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REACH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 신청절차에 따라 보호될 수 있고, SDS와 관련해 CLP 제24조에 의해 대체화학물질명(alternative chemical name)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국제표준 화학정보 데이터베이스(IUCLID)를 이용해 비밀보호 신청하는데, 신청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비밀보호가 허용된다. 영업비밀보호 신청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지식재산권협정(WTO-TRIPS) 제39조 제2항에 의한다.

신청인이 대체화학물질명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화학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대체화학물질명 사용이 영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제공했으며, 혼합물을 취급할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ECHA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6주 이내에 대체화학물질명의 사용에 대한 승인 가부 결정을 통지해야 하고, 만약 ECHA에서 6주 이내에 대체화학물질명의 사용에 대한 승인 가부 결정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대체화학물질명의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나. 미국

미국의 MSDS 제도에서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것은 화학물질명(Chemical Name)을 식별하기 가능한 것뿐이며, 그 외의 항목에 대해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화학물질명에 관한 영업비밀의 주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환에서 기업이 자주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화학물질명 이외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기업 간에 영업비밀 계약을 맺은 후에 MSDS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유해성 공시기준’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에서는 ①근로자들이 노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경우, ②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작업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③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④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경우, ⑤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선정하는 경우, ⑥노출된 근로자들에게 공학적 대책 및 다른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경우, ⑦노출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MSDS의 경우에는 유해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신규물질신고제도에 의해 기업은 MSDS에 포함되는 정보를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 비밀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EPA는 기업이 신고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승인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 일본

일본의 MSDS 제도는 독물 및 극물 단속법에 근거하는 MSDS,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는 MSDS, 화학물질배출 파악관리촉진법(化管法)과 관련된 MSDS 등이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해 화관법에서는, 제1종 지정화학물질등 취급사업자는 MSDS 신청 시 제1종 지정화학물질의 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거나 생산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은 당해 제1종 지정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당해 제1종 지

정화학물질에 속한 분류로서 주무성령이 정한 분류의 명칭(對應化學物質分類名)으로 통지할 것을 주무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化管法 제6조 제1항).

4. 마치며

이상에서 외국의 MSDS와 영업비밀보호의 관계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외국과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보호의 적용이 제외되는 물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영업비밀 보호의 청구와 공개를 위한 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산안법에 의하면, MSDS 작성 시 영업비밀 기재 여부를 사업주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개요청절차 및 공개거부에 따른 행정조치에 관한 규정의 신설,⁴⁾ MSDS 수거 검정제도의 도입, 영업비밀 사전 심사 또는 허가제도의 도입⁵⁾ 등이 제시되고 있다.⁶⁾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의 알 권리, 작업장에서 안전보건권의 확립, 사업주의 영업비밀에 관한 이익의 보호 등이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기술혁신의 주기가 매우 짧고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김수근, ‘반도체 제조업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2권 제1호(2012), 24면

5) 김신범 · 이윤근 · 최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업비밀 사전 허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 분석’,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25권 제4호(2015.12).

6) 영업비밀의 승인 대신 등록만 의무화하는 전산 등록 시스템을 우선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업비밀 전산 등록 시스템은 전산을 이용해 영업비밀로 하고자 하는 성분의 명칭과 카스번호가 기록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록한다. 전산등록을 하면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는 영업비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신,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업비밀 정보가 담겨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개되도록 하고, 계속 영업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재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면 행정력을 크게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영업비밀사전 승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김신범 · 이윤근 · 최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표시 제도의 개선 방향 제안 -미국 유해정보소통기준(HCS)의 비판적 고찰에 기초해-’,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25권 제1호(2015), 12면.